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시방서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2026년 권선구 및 수원시 긴급 누수복구공사(4차및동절기)[단가계약]』에 적용한다.
2.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5. 시공된 구조물이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7.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들의 일지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1. 공사연기조건
 -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설계변경조건

・당초 조사 시 보다 지하매설물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1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착수하여야 한다.

15.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17. 시공관리 일반사항

○ 관접합 및 부설공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개,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 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 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또는 굴삭기 등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보관할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 관부설공

·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사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 할 수 있도록 별도 복장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관을 설치하기 전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접합부 내면에 삽입되는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한다.

· 고무링 내면과 삽입부에 이물이 없도록 젖은 걸레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 관부설은 기존 배수관과 밀착하여 부설하며 새로 부설한 배수관 통수 후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을 연결하여 기존 수용가가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상수도 관련 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정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 관의 절단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강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기설관과의 연결

· 관의 연결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 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 (위치, 관종, 관경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 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포장공

·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 적용할 제시험기준

·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설 및 다짐

포설방법 및 다짐방법은 공사감독원에게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을 시험 포설하여야 한다.

· 아스콘표층 및 다짐

표층의 다짐밀도 및 평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짐장비의 조합, 포설시기 등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표층의 포설은 준공일자 및 공사시공 시 파괴 등을 고려하여 포설시기를 결정하되 기층포설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포설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프라임코팅

프라임 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MC-1로서 포설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 택코팅

택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RSC-4로서 포설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은 35ℓ/a이나 현장여건 또는 기층포설 즉시 시공할 경우,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0.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1부, 준공과 동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단수계획 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락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통수 준비공

·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여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5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3. 공사 준공 후 5일 이내에 GIS 입력에 필요한 각종자료 (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24. 공사대가의 산정

- 공사금액의 산정은 계약내역으로 지급하며, 계약 내역에 없는 신규 공종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낙찰율을 적용 대가를 산정 지급한다.
- 장비의 출동시간은 30분을 계상하고 차고지 회차 시간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하며, 교통혼잡을 이유로 초과시간을 계상할 수 없다.
- 식사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초과된 작업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누수위치의 정보를 파악하여 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미리 준비하여 출동하여야 하며, 자재수급을 이유로 대기한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 장비대기시간은 실제 장비 대기한 시간으로 하며 자재수급, 장비고장, 관공지연에 따른 대기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건설표준품셈 1-4-3 품의 할증에 따라 작업여건에 따라 할증적용을 한다.

25. 공사대금 지출

- 긴급 누수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복구 하고 추후 발생건별로 측량기구를 이용하여 터파기 면적 및 포장 면적등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측정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감독관이 이를 확인하면 건별로 내역서를 산출하여 매달(공정에 따라 2개월~분기별로 변경) 기성금 지출하여 정확한 물량 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